

“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”



법원행정처

수신자 대한법무사협회장

참조 김진석 법무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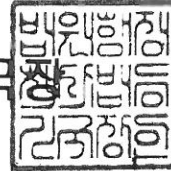
제목 「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
내에 채권자보호절차(공고)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 처리」에
관한 질의 회신

1. 사법등기심의관실-1656호(2018. 5. 15.자)로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
대한 회신입니다.

2.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
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
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,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
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.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
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
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(상법 제439조제2항,
제232조, 상업등기선례 제1-228호 참조).

3.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
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, 주
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
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
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(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, 상업등기
규칙 제142조, 제111조제2호, 상업등기선례 제1-225호 참조). 끝.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



등기사무관

정현철

심의관

정준호

국장

김우현

협조자

시행 사법등기심의관-2838 (2018. 7. 27.)

접수

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967)

/http://www.scourt.go.kr

전화 02-3480-1888

/전송 02-599-2743

/white5454@scourt.go.kr

공개